

(비공식 번역본)



투자청(BOI) 공고

No.12/2561

투자기업 장려 조치

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 예정

---

투자청 공고 No. 2/2557(2014년 12월 3일) 이후 태국 기업가들이 그들의 회사를 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;

투자청(BOI)은 투자진흥법 제 16 조, 제 18 조 및 제 31 조 (1977년:B.E.2520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으로 이 공고를 발표한다:

1. 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 31 조 1 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는 추진기업(promoted companies)은, 자본투자금(토지와 순환출자자금 제외)의 100%를 추가로 법인세에서 면제한다.

2. 투자 추진된 사업(promoted investment projects)은 이미 수익을 창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31 조 1 항에 따른 권리와 특권에 따라 시간제한과 법인세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 법안에 명시된 추가 권리와 특권을 받을 수 있다.

3. 이 조치에 따라 사업추진 특권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는 반드시 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. 상장일은 태국 증권 거래소가 회사의 보통주를 태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수락한 날짜를 말한다.

4. 이 조치에 따른 추가 권리와 특권 신청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.

5. 본 공고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본 조항에 따른 권리와 특권을 받을 수 없다.

이 공고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발효된다.

2018년 12월 28일 공고

제네랄 브라우트 찬오차

(브라우트 찬오차)

투자청(BOI) 의장